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30.(목) 12:00 2022. 7. 1.(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6. 30.(목) 12:00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윤병민 (044-202-8937) 주무관 김병석 (044-202-8939)
<공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부	책임자	팀 장 박응호 (052-703-0520)
		담당자	차 장 김국성 (052-703-0636)

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민간발주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24.3% 감소

- 7~8월, 민간발주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집중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

○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7건)으로 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 ①(2.16) 한국도로공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②(2.26)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신축공사>
③(3. 8)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매립공사>
④(5.19) 경상남도 <수도시설 개선공사>
⑤(5.26) 전라북도 <교량건설공사>
⑥(6. 2)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관사 신축 소방공사>
⑦(6. 8) 경상북도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공사>

○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지방노동관서).

* 붙임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또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관).

* (발주기관 자체점검) 6.13.~6.24.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지방공기업)별 발주공사 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 6.29.~7.5.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점검(행안부·고용부·국토부 등)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 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

○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산안법 제67조, 붙임2 참고)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요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 의무
3. 건설공사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작성·이행토록 함

□ **(대상) 일정한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3> 최대 지간거리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4> 터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계획서 작성·심사)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작성**하여 고용부(안전공단) 제출

* 동일 현장에서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또는 단위작업공사)가 있는 경우, 계획서를 분리 제출 가능

○ 심사결과 `**부적정**`인 경우 **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조치
`조건부 적정`인 경우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심사결과 통보

□ **(이행 확인)** 건설공사도급인은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6개월 이내**마다 **그 이행에 관해** 고용부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 **확인***을 받아야 함

* ① 계획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②계획변경시 그 적정성
③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 확인 시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경미한 위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붙임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 의무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제1, 2항>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설계), 확인(설계·시공)하고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본 안전보건대장) 공사 계획 시, 발주자는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설계 안전보건대장) 공사 설계 시,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

▵ (시공 안전보건대장) 도급인에게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인**

□ **공사기간 단축,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설계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비용절감 목적의 **위험공법 사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변경 금지**(1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시 가중처벌 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산재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22.8.17.부터 계약주체 시공사→발주자 변경>

○ 발주자는 1~120억원 건설공사 발주 시 **전문기관**과 **산재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 도급인은 기술지도(월 2회)에 따라 조치(3백만원 이하 과태료)

□ **기 타**

○ (**적정 비용·기간 보장**) 설계자,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시공하도록 적정 비용·기간 보장(법 제67조 제3항, 벌금·과태료 無)

○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 공사 도급 시, **작업혼재로 인한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68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공사기간 연장**) **일정사유***에 해당하여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제70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①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
②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설계 변경**) 도급인이 **붕괴 등** 위험이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수용**(제7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3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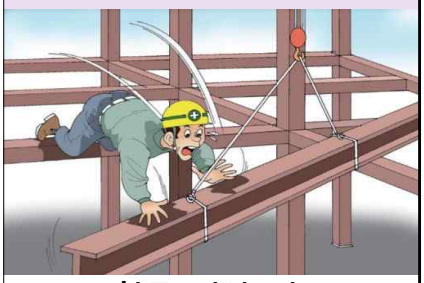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전 안전점검(TBM)! 생명을 지킵니다.

1위 단부·개구부 떨어짐



단부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2위 철골 떨어짐



철골 인양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3위 지붕 떨어짐



안전모·안전대 착용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4위 비계·작업발판 떨어짐



안전난간 설치,
외벽 틈 추락방호망 설치

5위 굴착기 부딪힘



작업반경 출입통제
후방영상장치 작동 확인

6위 고소작업대 떨어짐



안전대 체결
작업대 이탈 금지

7위 사다리 떨어짐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8위 달비계 떨어짐



구명줄 안전대 체결
2개 고정점 설치(구명줄,작업줄)

9위 트럭 부딪힘



이동구간 출입통제
전담유도자 배치

10위 이동식 비계 떨어짐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11위 거푸집·동바리 떨어짐



시스템동바리 사용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12위 이동식크레인 맞음



인양물 고정 철저
하부 출입통제